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8.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기획전략과장)
- 제출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신설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정원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현행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3% 이내	31% 이내	4% 이상	1% 이내
변경	〃	6.5% 이내	〃	34% 이내	〃	〃	0.5% 이내
증감	-	△ 0.5%	-	+1%	-	-	△ 0.5%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313명 (변동 없음)

- 일반직 계: 1,310명 (변동 없음)
 - 4급 : 7명 → 8명(+1)
 - 5급 : 65명 → 67명(+2)
 - 6급이하: 1,236명 → 1,233명(△3)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비용추계서: 비해당
- 입법예고(2025. 10. 136. ~ 11. 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을 조정하고 정원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총 정원은 1,313명(정무직 1, 일반직 1,310, 별정직2)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4명이 각각 증가하였고, 8급 11명, 9급 1명이 각각 감소하였음. 기관별로는 구 본청 2명, 보건소 2명이 각각 증가하였고, 동은 4명 감소하였음.

◇ 기관별 정원관리 조정(안) 개요

(단위: 명)

구 분	계	구 분 청	보 건 소	동	의 회
현 행	1,313	828	89	358	38
조정(안)	1,313	830	91	354	38
증 감	-	+2	+2	△4	-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 조정(안) (일반직 공무원)

(단위: 명)

구 분		계	4급이상 (2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현행	책정 기준	100%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3% 이내	31% 이내	4% 이상	1% 이내
	정원	1,310	8(1)	65	295	432	375	134	1
조정 (안)	책정 기준	100%	1% 이내	6.5% 이내	23% 이내	34% 이내	31% 이내	4% 이상	0.5% 이내
	정원	1,310	9(1)	67	300	436	364	133	1
증감	책정 기준	-	-	△0.5%	-	+1%	-	-	△0.5%
	정원	-	+1	+2	+5	+4	△11	△1	-

※ 정무직 1·별정직 2 (미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24조 및 제29조에 정원의 관리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우리구 인건비 예정액은 1,328억원 정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 1,215억원 보다 113억원 정도 초과 소요되지만, 우리 구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고, 행정기구의 수는 적은 편임. 이에 기구 신설 및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조직운영 방침에 따라 정원 변동 없이 직급별 상계 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